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역농업연구기반사업 실험장비 구입 변경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 ○○기술원 ○○○○연구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연구 기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도 농업기술원을 지역농업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6년 ○○○○연구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농업연구기반 사업 운영지침」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르면 사업 수행 중 집행 잔액을 활용한 기자재 추가 구매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붙임 1>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충청남도○○기술원의 사업내용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 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기술원 ○○○○연구소에서는 ‘2016년 ○○○○연구기반고도화사업(사업비 156,200천원)’으로 시험연구 활성화를 위한 실험장비 구입을 하면서 변경 신청 및 승인절차 없이 당초 계획에 미계상된 실험대 8개, 배

양운반 카트 3대, 가정용 싱크대 1대를 구입(8,475천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주의]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을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